특허심판원, 상표불사용취소심판 제도개선

동일인의 다수 상표불사용취소심판청구는 동일자에 심결

특허심판원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동일 심판청구인이 다수의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 심판관별로 서로 다른 날짜에 심결을 하던 것을 같은 날에 하도록 개선하였다.

청구인이 같은 날에 다수의 유사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은 서로 다른 심판관이 별도로 심리함으로써 절차의 중복과 시간지연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제도란?
일반국민이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타인에 의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동 등록상표가 실제로는 3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유명무실하게 등록만 되어 있는 상표일 경우에는 출원인은 동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등록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그 날부터 3개월 내에 청구인에게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심판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받더라도 심판일자가 서로 3개월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청구인은 그 등록취소된 상표를 우선적으로 출원을 할 수 있는 기한(심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놓치게 됨으로써 결국은 심판을 청구한 실익이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었다.

※상표법 제8조(선출원) 제5항: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상표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간은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일인이 청구한 다수의 상표불사용취소심판사건을 원칙적으로 동일 심판관에게 배정하여 병행심리(또는 병합)를 통해 심결이 같은 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병합심리와 병행심리란
병합심리: 심리의 중복 및 심결간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심판사건을 하나의 심결로 종결하는 것
병행심리: 다수 심판사건을 동일 심판관이 동시에 진행하여 동일자로 종결하는 것

한편, 청구인이 다른 날에 청구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청

A모씨, 위조상품신고로 330만원 지급받아

경기도에사는A모씨는위조상품을신고하여지난2월특허청으로부터330만원의포상금을지급받았다. A모씨는 특허청에서금년부터시행하고있는위조상품신고포상금제1호수혜자가되었다. 특허청관계자는1월달에이미신고가많이들어왔기때문에A모씨와같은신고포상금수혜자가계속늘어날것이라고말했다.

위조상품을제조하거나유통한자를신고하는경우업자가취급한위조상품의가액에따라최저10만원부터최고천만원까지포상금을받게된다. 정품가액기준100억원이상의위조상품을제조또는유통한자를신고할경우에천만원의포상금을받게되며, 정품가액기준1억원미만의영세소매상을신고한경우에는포상금을지급받지못한다. 단순신고자외에위조상품관련고소나고발인도포상금지급신청을할수있다.

특허청관계자는"정확한정보제공없이막연한추측으로위조상품신고를하는사례가있다"면서"확실한증거없이신고가남발되어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했다.

위조상품신고는특허청이나, 각검찰청(지청) 또는경찰청(서)에할 수 있고, 각기관의홈페이지를통해서도가능하다.

제공 특허청

구서, 의견서, 정보제출서를통하여동일자 심결을요청하면심판관을조정하여동일자또는서로인접한날짜에심결을하도록하였다.

※사건배정방식:「다수의상표불사용취소심판청구」가같은심판부에배정된 경우에는심판장이특허심판원장에게심판관변경을요청하도록하였고, 서로다른심판부에배정된경우에는심판장간에협의조정하여심판의 순위규정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심결을동일자또는서로인접한시기에하도록함

이와같이청구인이여러개청구한「상표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심리를동일자로 종결함으로써등록취소된상표를우선출원기간(3개월) 내에안정적으로등록을받을수있게되었다.